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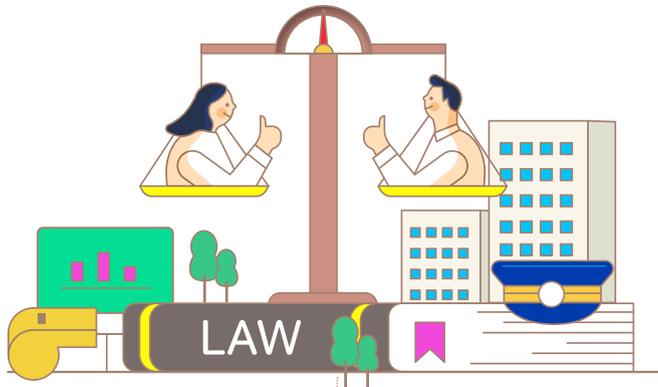
같이 보기

: 조문별 제정 이유서

『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정안

조문별 제정 이유서

법무부공고 제2021-215호(2021. 7. 12.) | 대통령령(제정)



1. 시행령 제정 목적(안 제1조)

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

나. 제정 내용

-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다. 입법효과

-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 제고

2. 직업성 질병자(안 제2조, 별표1)

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‘직업성 질병자’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
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다목

나. 제정 내용

-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·유기주석·메틸브로마이드·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

3. 공중이용시설의 범위(안 제3조, 별표2 및 별표3)

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‘공중이용시설’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
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

나. 제정 내용

-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제1항의 시

설 중 지하역사,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,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,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·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유소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

※ 다중의 이용 빈도가 적은 실내주차장, 갑문시설·배수 펌프장, 개인 거주시설 등은 제외

4.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(안 제4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'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

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'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
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2항

나. 제정 내용

○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, 유해·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 절차, 전문인력의 배치, 적정한 예산의 편성, 전담 조직 구성, 종사자 의견의 청취, 위기대응절차 마련, 도급 시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규정

5.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(안 제5조)

가. 제정 이유

○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'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'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
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항





나. 제정 내용

-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보고 및 필요한 조치,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등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상의 조치 규정

6.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(안 제6조 내지 제9조, 별표4)

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‘안전보건교육 및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등’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- 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나. 제정 내용

-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, 교육시기 및 방법, 교육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
-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, 규모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과태료 기준을 규정

7. 원료·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(안 제10조, 별표5)

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‘원료·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’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- 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

나. 제정 내용

- 원료·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인력 배치·업무부여에 대한 확인·점검 의무,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확인·점검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규정
-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·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·위험요인 점검 및 사후조치, 보고·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의무 부과

8. 원료·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(안 제11조)

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'원료·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'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- 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4항

나. 제정 내용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연 2회 이상 관계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·확인하게 하고,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
-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의무 부과

9. 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(안 제12조)

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'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'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- 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4항

나. 제정 내용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매년 안전계획 수립 여부 및 필요한 안전 인력·예산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이행의무 부과

10. 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(안 제13조)

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'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'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- 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4항

나. 제정 내용
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외 의무이행의 점검·교육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

11.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(안 제14조)가. 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'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의 방법과 기준, 절차에 관한 사항'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
- ※ 근거법령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나. 제정 내용

-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, 게시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

12. 서면 자료의 보관(안 제15조)

가. 제정 이유
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나. 제정 내용

-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📄